

## 부천시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8. 12. 3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. 12. 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6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1999. 3. 5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원태희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에 도덕성을 겸비하고 개혁추진력이 있는 인사 및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다수의 인사들을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고 이에 따른 고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위원 증원 : 현행 50인 ⇒ 개정 60인(안 제3조제1항)
- 고문을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자 5인 정수조문 삭제(안 제3조제4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고문이 60인 이내에 포함되었습니까?	○ 고문은 정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○ 고문이나 위원의 임기는 같습니까?	○ 임기는 같습니다.
○ 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은 어디서 선정했습니까?	○ 총무과 시정팀에서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했습니다.
○ 조례를 시행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개정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	○ 학계 등 유능한 인사가 빠져서 위원수를 증원하고자 합니다.

○ 지침상에 있는 것과 같이 50인 이내가 적당하지 않습니까?	○ 자체실정에 맞게 하도록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"별첨"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수정안 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 79 호
의결년월일	99. 3. 9 (제69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3. 5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○ 부천시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에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2의견국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위원과 고문의 수를 현행대로 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음.

□ 주요골자

- 위원수를 현행과 같이 50인 이내로 함(안 제3조제1항)
- 고문수를 현행과 같이 5인 이내로 함(안 제3조제4항)
-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의2)

## 부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중 “60인 이내의”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50인 이내의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4항을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상임위원회)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②~③ (생략)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.  (신설)	제3조(구성) ①..... .....60인 이내의..... .....  ②~③ (생략)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.  (신설)	제3조(구성) ①..... .....50인 이내의..... .....  ②~③ (개정안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  제7조의2(상임위원회)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